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연금지급개시전에는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 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최초납입일로부터 10 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연금지급개시후에는 펀드 운용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형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 해약할 수 없습니다.

※이 약관은 이해가능도 평가결과 상법이나 표준약관 문구의 준용으로 약관의 일부 표현이 복잡하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며, 어려운 표현의 정도가 경미하여 약관 이해가능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물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4. 청약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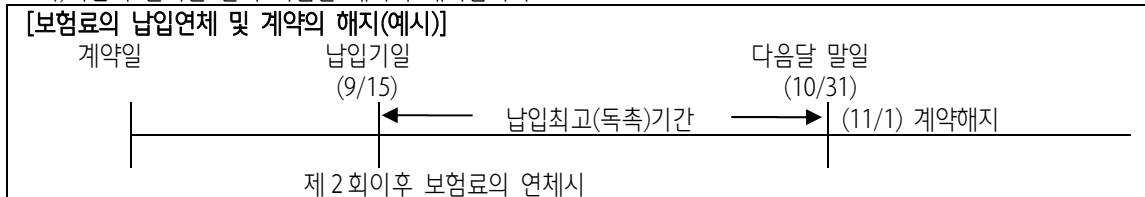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고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목차]

-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 7
- 특별 조건부 특약 약관 ----- 35
-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약관 ----- 41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11

-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청약의 철회】
- 제 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제 4조【용어의 정의】
- 제 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7조【계약의 무효】
-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 제 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10조【계약의 소멸】
- 제11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15

-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제15조【보험료 납입중지】
-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17

-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2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24조【해약환급금】
- 제25조【배당금의 지급】
- 제26조【소멸시효】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19

- 제27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제28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제29조【펀드의 유형】
- 제30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제3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제32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제33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제34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35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제36조【특별계정의 폐지】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2

-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
-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3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3

- 제40조【주소변경 통지】
- 제4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42조【대표자의 지정】
- 제4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4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45조【보험금 등의 지급】
- 제4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47조【계약내용의 교환】
-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7관 분쟁조정 등 26

- 제50조【분쟁의 조정】
- 제51조【관할법원】
- 제52조【약관의 해석】
- 제5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54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제55조【결산사항의 통지】
-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57조【준거법】
- 제5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 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생존 연금 지급 형태	기간보장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장부 종신연금형		

④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 5」세(단, 3년납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나이 - 7」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 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실적연금형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이하 같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최

- 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3.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4. 신용생명보험계약의 경우
 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 ④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에 한함)
2.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4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까지 최소 5년(단, 3년납의 경우 7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1. 연금지급형태

생존 연금 지급 형태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실적배당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⑤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소멸】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5」세(단, 3년납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7」세) 연계약 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4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

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제3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3항에 의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납입기일의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보험료 납입중지】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만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서면에 의해 보험료 납입중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 중지 후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비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전까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 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기본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 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2.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3.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4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4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 책임준비금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항 및 제9조(계약자의 임의 해지)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단,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실적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포함합니다)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제3항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이율(단,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로 합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7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및 매월 계약 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④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8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29조【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3.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4. 안정성장형 / 안정성장형Ⅱ :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5.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6. 글로벌혼합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7.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 : 신흥 이머징마켓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40% 이상을 투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 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 펀드 50% + B 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A 펀드와 B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3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29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의 편입비율은 50%이내로 합니다.)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 시에는 10만원이상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36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제30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 의해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⑧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제32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3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1,000 만원이며, 해당일자의 펀드기준가격이 1,250.00 일 경우,
계약자 보유좌수는 1,000 만원 ÷ 1,250.00 × 1,000 = 800 만 (좌수)
이후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좋아져서 펀드 기준가격이 1,400.00 으로 증가하였다면,

계약자 적립액은 800 만(좌수) X 1,400.00 만원 ÷ 1,000 = 1,120 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제34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5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6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1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 651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3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0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4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지급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5조【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4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4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 미만 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제4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도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 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상환일 기준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은「공시이율+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 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용합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5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5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4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5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1호)

(단위 : 1구좌)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600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2. 생존연금 (약관 제19조 제2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기간보장부 종신연금형

①개인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 이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1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고,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②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 상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1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고,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 상자)	지급사유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10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0년) 이후 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11차년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의 10차년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0차년도) 연금액의 동일액 을 지급

나. 금액보장부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 이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약관 제8조 제4항)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기간보장부 종신연금형

①개인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 이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1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고,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②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1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고,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10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0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11차년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1차년도) 이후 매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10차년도(20년 보증형의 경우는 20차년도) 연금액의 동일액을 지급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 이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라.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마. 실적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회 보험계약해당일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 좌수를 분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4. 용어의 설명

-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및「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단,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생존연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 년도 연금액과 동일 또는 체증률로 체증한 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액형이라 하더라도 직전 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체증형인 경우도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로 체증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공시이율」(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은 매일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6)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

- 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7)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10회(또는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8)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7년,10년,15년,20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7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9) 실적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잔여 지급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7년,10년,15년,20년) 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11)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 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1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생존연금 지급형태 중 실적배당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운용되는 특별계정(펀드)에서 계속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운용하여 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나누어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text{연금지급액(납입후유지비 포함)} = (\text{연금지급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 / \text{잔여연금지급횟수})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기준가}$$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시점 현재 1억좌를 보유하고, 5년간 매월 단위 지급을 신청한 경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
보유좌수	100,000,000	98,333,334	96,666,668	95,000,002	93,333,336	...
잔여연금 지급횟수	60	59	58	57	56	...
1000좌당 기준가	1,100	950	1,050	1,100	1,200	...
연금지급액	1,824,212	1,575,456	1,741,293	1,824,212	1,990,049	...

* 상기 연금액 예시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가, 보유좌수, 연금지급액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연금 지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의 연금지급액은 납입후 유지비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예시한 것입니다.

- 13)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14)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6)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일반계정에서 부리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합니다. 단, 매년 계약 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계약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7) 계약자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생존연금의 지급형태 중 최대 2개의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8)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9)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단,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가지 연금 형태에 최소 30% 이상의 계약자적립액을 분할 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 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45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19조 제1호)

적립기간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생존연금(약관 제19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적립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기간
	예정이율의 50%	1%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약환급금(약관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 해약환급금(약관 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

적립기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기간
	예정이율의 50%	1%

적립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약환급금(약관 제24조 제2항)

적립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줄이율

(주)

1. 상기 예정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예정이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의 경우 「보장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6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 조 【특약의 내용】
- 제 3 조 【특약의 부가조건】
-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 제 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2인(3인, 多人)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害増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 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5
제 1 조 【적용대상】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5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45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46
제 7 조 【준용규정】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